

〈 특 집 〉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宋 相 現\*\*

I . 세계의 변화와 법학의 발전

1) 세계의 대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학은 이제 인류의 平和(Peace), 正義(Justice), 人權(Human rights), 福祉(Welfare), 民主化(Democratization) 등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규범과학으로 거듭나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날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논의와 수요는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받은 능력있는 법률가를 부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미국과 같이 다수민족이 混在하는 新天地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없고 따라서 자연발생적 관습이나 전통규범 또는 공통된 사회적 금기 등과 같은 통일된 행동기준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법만이 平和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法の 支配(Rule of Law)는 주로 미국적 맥락에서 강조되어온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제는 세계화현상(Globalization)이 가속화되면서 全世界的 含意를 갖게 되었다. 즉 각 국가를 초월하여 지구촌에 형성된 하나의 놀이마당에서 모든 국가와 개인, 국제기구, 다국적기업들이 저마다 국경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는 준칙은 결국 법밖에 없고, 법의 지배는 행위주체에게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주고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현상은 법치 내지 법의 지배원칙의 전면적 확산 및 의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法治의 중요성을 잘

---

\* 이 글은 2004년 5월 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인식하지 못하므로 법학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 및 올바른 법조인력양성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책입안자들은 다양화와 동시에 세계화의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法の支配(The rule of law)야말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법학의 첨단적 발전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주도해온 감이 있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학계는 法經濟學이라는 극도의 計量的, 分析的, 客觀主義的 접근방법이 一世를 풍미해왔다. 이는 시카고법대의 Richard Posner 교수를 중심으로 立論된 것을 하버드, 스탠포드 등 일류법대가 더욱 크게 발전시켰고, 시카고의 Ronald Coase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후 마침 미국을 풍미한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법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금씩 主觀主義的 接近方法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계량적 분석결과보다는 행위자의 心理, 嗜好, 認識을 주제로 삼는 法心理學的 접근방법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4) 국내법과 국제법이 이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 짝지어 상호보완관계를 이룩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법이란 대외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공법체계이었으나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주체가 국가 외에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개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국제법은 이들의 다양한 公私法的 행위에 모두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법은 이제 별도의 공법체계라기보다 공사법원리가 혼재한 채 국내법 각 분야의 국제적 적용 내지 발현이거나 지구촌 한마당에서 두루 통용되는 기준으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 각 분야를 공부할 때 항상 그 國際的 含意와 變容을 연결시켜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제는 私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속지주의가 강한 節次法이나 破産法 그리고 領土主權性이 가장 강한 刑事法분야에서도 급속히 국제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므로 넓은 안목으로 공부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5) 公私法的의 구별이 무의미해진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구별은 대륙법, 특히 國家學(Staatslehre) 내지 官房學이 발달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강조되었고 원래 영미법국가에서는 그러한 구별을 이론화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각종 법률행위주

체도 다양하고 그들의 행위의 성격이나 목적을 구분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럴 필요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학의 어느 한 분야를 독점하여 獨也靑靑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全天候의으로 법률현상을 다루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공사법을 구분함은 종합적 사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들이 쌓아온 전 공분야별 철용성을 허물어뜨려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6) 종래에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구별 및 兩 體制의 상이한 접근방법이 항상 대비되고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兩 法系는 세계화과정에서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보완하면서, 분야별로 예컨대 유엔動產賣買條約의 경우와 같이 절충적 해결방식을 도출하거나 대부분의 海商法과 保險法 분야처럼 영미법적 체제와 방식으로 귀일되는 현상을 자주 본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세계무대에서의 추이는 점차 어느 법계를 막론하고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거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7) 인류는 상호번영을 위하여 꾸준히 여러 가지 경제적 거래규범을 통일시켜가고 있다. 획기적인 예는 대부분의 一次產品, 工產品, 서비스 및 知的財産權분야의 국제적 자유교역을 위하여 성립된 WTO이다. 그 전신인 GATT협정은 처음에는 일개 契約의 모습으로 그 법적 효력조차 의심받았으나 반세기이상 법률가들의 노력으로 점차 실효성을 갖추었고 1995년 WTO로 계승된 후로는 그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내리는 결정은 현존하는 국제기관이나 국제재판소가 내리는 판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國際法上 執行力을 발생하게 되었다. 아직 국제적 공통규범을 달성하지 못한 資本의 自由移動(Capital movement)과 사람(근로자 및 전문직 포함)의 자유이동(Human Capital Movement)의 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국제적 진척상황으로 보아 선후진국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줄어들고 여건이 확보되면 장차 WTO에 비견할 수 있는 통일규범이 성립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거래, 환경, 노동, 소비자보호 등 각 공법적 성격이 강한 법 분야에서도 지구촌 한마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성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8) 세계화의 방향으로 줄달음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지역별 또는 대륙별로도 여러 가지 공동협력체제와 규범이 제정되어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通商分野에서 북미의 NAFTA, 중남미의 MERCOSUR, 동남아의 APEC, 아프리카대륙의 NEPAD 등은 이미 고전적 예에 불과하다. 또한 人權分野에서도 각 대륙별 기구가 조직되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이미 많은 판례를 생산하여 인간의 기본권 증진에 기념비적 공헌을 하고 있고, 중남미대륙의 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도 가동 중이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마저도 아프리카 인권법원(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설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는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지역적 통상규범이나 인권보호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제에 대한 인식수준도 매우 낮아서 유감이다. 예컨대 수준높은 법학교육을 받은 한국의 법률가들이 아시아의 지역협력이나 인권보호노력 또는 사형폐지운동 등을 선도할 날은 곧 올 것인가?

9) 법률가의 사명은 신과학기술의 개발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말고 이것이 인류공동복지와 평화를 위하여 善用되도록 입법 및 법해석적용을 통하여 先導해야 한다. 서울대 黃禹錫, 문신용 두 분 교수의 실험을 보자. 원래 인간의 난자와 정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Chromosome)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수정을 통하여 합쳐져야 비로소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인간이 태어난다. 聖經은 受胎순간부터 生命이 시작된다고 보므로 그 후의 모든 의학적 실험은 기독교의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경우 수니파는 수태 후 44일 후부터, 시아파는 120일 이후부터 생명체로 인정하므로 기독교적 비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황 박사의 실험은 난자와 정자의 인공수정이 아니라 卵子를 채취하여 그 핵을 제거하고 그 대신 인간의 成體細胞(adult cell)를 삽입하여 자라게 한 것이다. 이는 세포분열을 거듭하면서 각종 장기 등이 뚜렷하게 발달하므로 달이 차면 성체세포 제공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또 하나의 복제인간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과정에서 얻어진 줄기세포를 보관해두었다가 만일 성체세포제공자의 장기나 신경조직 등이 파괴된 경우 이를 거부반응없이 이식함으로써 부치병이나 장애를 완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면의 연구에 한국의 기술이 세계첨단인 이유는 젓가락 사용으로 손재주가 좋은 덕택에 난자의 핵을 대롱으로 흡인하여 빼내는 기술 및 성체세포를 다시 삽입하는 置換技術에서 먼저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유엔에서는 人間複製(Human cloning)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法理의 主戰場이 되어있다. 미국은 일체의 인간복제를 법적, 윤리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킨 다음, 치환기술대신에 다량의 혈액을 확보하여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의 전단계인 전구세포(Omnipotent cell)를 발견해내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하버드대학도 2004년 3월 줄기세포연구소(Stem Cell Institute)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치료목적의 줄기세포(Stem cell) 찾기를 위한 기술개발에는 많은 법률적 쟁점이 등장한다. 임신기간 동안에 실시되는 각종 실험은 생명과 무관하고 합법적인가? 성체세포를 통하여 태어난 복제인간이 나자신인가 타인인가? 이런 과정에서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만 난자채취와 임신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불평등가능성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複製臟器를 이식받은 성체세포제공자의 생존여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인간사회의 각종 제도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나아가서 유전자조작인간(genetically modified human being)의 탄생을 법률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서울대 교수들의 실험의 예처럼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져올 법률적, 국제정치적 파장을 꿰뚫어보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용할 유능한 법률가를 길러내야 한다.

10)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이 탄생하고, 그 산하에 국가간의 분쟁을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를 창설했다. 이제는 국가간 분쟁의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류역사상 가장 잔악한 범죄인 戰爭(War Crime), 集團殺害(Genocide), 侵略(Aggression) 및 人道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네 가지 범죄의 경우 이에 관여한 개인범죄자들을 모두 國際法廷에 세워 처단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인류 최초의 國際刑事裁判所(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2002년에 출범했다. 물론 이 상설재판소가 탄생하기 전에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동경과 뉴른베르크에 설립된 전범재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국제적으로 추궁한 첫 선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 두 재판소는 勝者의 一方的 正義(victor's justice)를 위한 刑事法廷으로 비판을 받았다. 현재 유엔安保理의 결의에 의하여 창설된 舊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와 르완다학살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는 2008년까지 가동할 것이고, 최근에 설치된 東티모르, 시에라레온, 캄보디아 등의 임시국제형사재판소도 특정한 집단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미 국제형사법에 관한 상당한 판례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향에 발마추어 국제형사변호사회(International Criminal Bar Association)도 성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변화는 단순히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집행법, 國際的 搜查共助와 行刑共助 등에 있어서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 관한 로마조약(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피해자의 재판참여와 권리보호(Victims protection)를 재판소의 고유업무로 삼아 이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으며, 人權保護는 물론 특히 전쟁이나 집단학살의 경우 부녀자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人道法으로서도 가장 첨단의 위치에 와 있다.

## 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전제 조건

1)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형식에 집착하여 토론이 이루어졌고 외국의 사례도 겉치레로 조사됐을 뿐 경험과학적 토대나 면밀한 분석없이 때로는 감정마저 개입되면서 공리공론으로 세월을 보낸 감이 있다. 예컨대 별 근거도 없이 몇 년제라든가, 교양교육 몇 년에 전문교육 몇 년이 필요하든가, 그 연한을 이수하면 무슨 학위를 준다든가, 해외대학에서 개설된 인기품목인 몇몇 법 분야를 교과과정에 추가하여 가르치자든가, 국가고시와의 관계를 재검토한다든가 등, 學事行政的, 大學設置令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부정확한 법조인력수급예측에 터 잡아 추상적으로 남북통일이나 세계화현상에 대비하여 법률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반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또 다른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하리라는 예측은 검증된 바 없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人力養成 및 供給方式으로 이해하는 한,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대물림해온 현재의 법학교육방식, 교재, 교수진의 의식, 학사행정 및 국가시험제도로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에 부응하거나 또는 이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상적 법학교육의 뒷받침도 없이 수만 명이 고시촌에서 수년간 浪人을 하다가도 어느 날 시험만 합격하면 그 우연적 원샷으로 입신양명의 대열에 들어서고, 마스크이 역경을 극복한 합격자를 미화하는 나팔을 불어대는 현실을 개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법시험이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자가 과연 법률가의 기초와 자질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최소한의 질적 통제방법(Minimum quality control)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유리된 채 극심한 법률가출산제한방식(Maximum birth control)으로 수십 년간 운영되어온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법학교육과 국가인력활용의 기막힌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시험과 연계시키고,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결과를 국가가 검증함으로써 법률가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일 수밖에 없다고 잠정적으로 전제하자.

2)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전에 우선 정부당국과 대학, 법학교수 그리고 국외전문가 및 학외전문가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초현황조사 및 준비작업 등의 구체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보다도 교수가 엄정한 自己省察을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엄격한 設立基準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설립신청을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認可여부를 처리하게 하면 충분한 것처럼 말하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거나 이를 불공정하게 적용하면 학생 및 학부형과 국가의 장래에 죄짓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무릇, 하나의 새로운 제도나 기관을 도입 또는 설립(Institution-building)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고, 설립에 산파역을 하거나 창립업무를 담당하는 자(Founding fathers)들의 임무는 至難하고도 중차대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필자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초대재판관으로 ICC라는 인류최초기관의 기초형성에 관여하면서 운영, 인사, 조직, 재판절차, 피해자보호, 법률구조 등에 관한 나의 결정과 선택이 이 기관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고민을 거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3) 새로이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함에는 수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건물 등 하드웨어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 파악, 분석과 기획, 구체적 목표와 계획수립 등을 國際專門家에게 都給을 준다든가 교수양성, 교재편찬, 정보네트워킹 구축 등에도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대학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설립허가를 내주고 뚜렷한 목표없이 서로 모방하면서 종전의 4년제 법대를 운영하는 방식 내지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법학전문대

학원을 운영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은커녕 엄청난 예산낭비와 등록금 낭비, 과잉기대에 따른 차질과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말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여 밀지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모든 사학이 너도나도 나서다보면 결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마치 IMF 위기 때 부실화된 대기업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을 완비한 대학만을 엄선하여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허가해주는 정치적 결단이나 행정적 의지가 전연 흔들림없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영합주의적 풍조에 비추어볼 때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고수하면 서울대폐지 등의 정서와 함께 서열화 및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모든 대학이 똑같이 흉내내다가 저질과 낭비로 공멸할 것이다. 이미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의과대학의 濫設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4)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항 중에서는 현재 교수들의 과감한 인식전환 이외에 새로운 教授要員의 養成이 가장 핵심과제가 된다. 국가가 장기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교수요원 확보에 집중투자를 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人的, 財政的 資源의 효율적 활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관리 및 조정과 定期的 評價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학문연구자로서 研究方法論은 물론 研究基礎能力과 語學能力을 갖추어야 하고, 實務的 問題解決能力과 함께 연구결과나 실무경험에 터 잡아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학업과 연구를 마친 후에는 세계적인 연구소,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에서 Internship 또는 Externship의 기회를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귀국하여 후진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수가 되기 위한 進入市場의 투명한 기준과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는 주로 설립시의 인적 구성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수가 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5) 지금부터라도 교수들이 법학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일단 교수가 된 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수의 본분과 사명, 역할 등을 서술한 업

무지침서(Faculty Manual)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연구, 대내외관계 등을 막론하고 연구관리방법, 표절기준설정, 성희롱방지, 논문심사, 학회활동범위, 국내외협동, 대외참여정도와 제한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세대의 교수들에게 체계적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그 많은 세월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교수 노릇을 해왔다는 뜻이 되고 전근대적인 교육부의 획일적 기준에 타성적으로 매달려 분별없이 지내왔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 교수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나 교수들은 이러한 기초작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또한 서양법학을 수용한 이래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문작성시 脚註설정방법과 남의 論文引用時 그 기준이나 방법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각주설정방법도 사람마다 학교마다 각양각색이고 남의 논문을 인용하는 기준과 정도는 논의조차 된 일이 없으니 이러한 인프라도 구축하지 못한 基礎不實의 상태에서 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6) 교수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라고 한다. 教育을 책에서 조금 먼저 본 지식을 교실에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한다면 이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수의 교육현장 임무는 다 끝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수가 강의시간에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명확한 討論 및 論理展開, 그리고 事例分析 및 問題解決能力을 배양해주는 것이 교수가 강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과 방법이 된다. 따라서 교수들은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研究의 경우 외국 논문을 소개 내지 번역하거나 기존 논문들을 이리저리 짜깁기하여 돌리거나 서양법학의 정신적 외관만 노릇을 해온 것은 아닌지? 더군다나 반세기이상 교수간에 전공분야별로 확고한 방화벽을 설정하여 상호간에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은 학문수준의 퇴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학 각 분야를 종합하는 나름대로의 協同研究나 다른 인접 인문사회과학과의 學際的 研究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7)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앞서 현재 개설과목과 교재, 강의내용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국내외전문가들의 철저한 평가를 받아 개선보강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가르칠 구체적 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론을 미리 합의하여 그에 상응한 대표적 教材를 teacher's manual과 함께

편찬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만 서둘러 도입한다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교수가 과거와 똑같은 교재로 고물 레코드판을 틀 듯 똑같은 강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의 동일과목 담당교수들은 자주 모여서 교재, 강의의 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기초적 점검과 의견교환을 정례화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착안하여 한국법학교수회 주관으로 일찍부터 “법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과목별 세미나 시리즈를 계속 개최해도 교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은 교수들이 法學教育現場의 지킴이로서의 역할마저 포기한 것이 아닐까?

8)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의 현상과약과 도입후의 評價를 위하여 評價機關을 아울러 도입하여야 한다. 미국은 수백 개의 로스쿨이 있어도 매 7년마다 미국변호사협회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매우 엄격한 관찰, 측정, 분석, 비판, 심사를 통하여 해당 로스쿨의 학위수여 권한을 계속 認證(Accreditation)해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버드와 NYU가 이러한 평가대상이 되었을 때 필자는 그 힘든 준비작업에 한 달 이상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대학의 평가를 위하여 한국법학교수회가 자체평가제도를 준비하자고 주장해도 반응이 없다. 유사한 전문교육분야인 의학교육분야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韓國醫學教育評價院을 발족하여 가동하고 있음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企業에서는 사업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준 다음 그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결산, 평가, 반성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워 다시 뛰는데 왜 법학교육 기관은 이러한 변화와 개선의 몸부림이 없는가?

###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

아래에서 지적하는 논점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야만 실현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법학교육의 경우에 한정하여 논할 것은 아니나, 만일 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만 많은 예산을 들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국민의 법의식이 후진적이며, 정부나 기업의 지도자나 관리자가 법의 중요성과 法律

家の 效率的 活用을 잘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대세는 法の 支配 내지는 法治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선 법률가의 국내외 역할확대와 사회적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제대로만 설립하여 운영하면 이는 법치중심의 세계화과정에서 장차 교육과 연구와 실무의 측면에서 법학에만 한정하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전문적 종합적 인문사회과학기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항상 서양학과와 경쟁할 수도 있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리 상표의 업적을 산출하는 교육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다.

3) 우리 백의민족은 금수강산에서 수천 년 동안 폐쇄적인 동시에 사대주의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현상으로 인하여 白衣에 진흙탕 물이 좀 튀더라도 다른 나라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분쟁과 살육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적 생존규범과 윤리를 고취하는 동시에, 平和維持, 正義實現 및 人權保護를 중심으로 하는 普遍的 價値를 가르치고 달성하는데 그 핵심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즉 복잡하고도 급변하는 법학 각 분야를 분석적인 동시에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젊은이들에게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과 세계문명사적 관점에서 그들이 담당할 역할을 깨우쳐주고, 연구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권옹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이후로는 세계화 현상에 가속도가 붙어서 국제교류 및 무역, 매스커뮤니케이션, 문화적 충돌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법학의 발전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며 올바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항상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사행정을 대폭 개편하는 등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국제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한다.

4)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通商外交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4강과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安保外交를 양대 축으로 하는 生存外交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너무나 오랫동안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경시하는 한편

경제외교에만 매달려온 정책 때문인지 법학공부를 해야 할 선진국은 美國과 주위의 日本이나 中國 정도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고 전공분야는 국제거래나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私法分野에 치중되어 그동안의 편식현상은 실로 우려할 정도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미국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배울 것이 많은 유럽연합(EU)은 通商協力外交 외에 人權外交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인권정책의 중심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외교나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멤버로서 그 의무와 책임과 참여를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멀리 보고 다양하게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지역적, 정책적 편식도 시정하고 골고루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

5) 대학기능의 하나가 社會奉仕라고 할진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름방학에 잠깐 농촌봉사에 참여하는 비법률적 근로활동보다는 법률구조, 인권보호, 피해자보호, 환경보호, 각종 경제사회적 약자보호 등 公益性이 높은 법분야(Public interest law)에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론을 가르치고 현실에 참여하거나 국제기관에 인턴으로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높은 理想을 지닌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깨우쳐주고 법을 통한 弱者保護와 社會改革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학교육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다. 지난 30여 년간 교육자로서 부끄러웠던 것은 가르치는 법대생이 사법시험에만 매달리고, 해마다 많은 법대졸업생들이 야심찬 포부를 지닌 채 해외유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쟁을 통한 개인의 세속적 성공이나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지 아무도 부당하게 권리보호를 박탈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소외층에 관심을 갖는 젊은 법조인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교수들은 수년간 公教育 및 私教育과정의 무한경쟁 속에서 승리하여 법대에 들어온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장래가 국내외 도처에 널려있음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경쟁과 승리에만 익숙하여 터널비전(Tunnel vision)을 가진 학생들에게 인간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준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6) 하나의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에 헌신한 교수가 연구실에서 나온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과목을 자유로 개설할 수 있어야 연구와 교육이 서로 짝지어 학문수준향상과 연구결과전파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성문법국가에서 解釋法學의 필요성은 의연히 존재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는 조금이라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創意的 연구이거나 比較法的 연구이거나 批判的 연구이거나 實證的 연구이거나 臨床的 연구이거나 學際的 연구이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현장인 동시에 새로이 이룩한 과학기술적 돌파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법적, 제도적,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입법과 해석을 위한 學際間 研究所(Interdisciplinary research institute)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공과목, 필수과목, 고시과목 등의 엄격한 분리고정을 극복하여 교수의 연구진척에 따라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고 학과목이나 학과의 장벽을 넘어 포괄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의자체가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작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의의, 요건, 효과와 관련관례를 가르치고 고시준비에만 급급하는 분위기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발한 토론이 滿開하는 좀더 매력적인 교육과 연구의 한마당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한다.

#### IV. 결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적, 연구적,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기관의 도입여부는 법학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definition), 현실과악, 분석 및 측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법학교육을 일반교양교육보다 전문교육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컨센서스는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정확한 현실과악과 분석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필요하다면 맥킨지 컨설팅회사를 위촉하여 경영진단이라도 받아야 된다. 현실과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설치에 관한 물리적 관점이라기보다 法學教授들의 意識構造, 洞察力, 意志 및 現實認識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수들의 냉혹한 자기비판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반성의 결과 교수들 나름대로 법학교육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구축, 준비작업, 청사진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변화와 법학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즉 신규 교수요원의 장기적 양성과 배치계획이 준비작업의 핵심이 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